

푸드머스(SL)

정 보 공 개 서

주식회사 푸드머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식회사 푸드머스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소 소재지] 본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맣리로2번길 31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일오피스텔 7층

[대표 전화번호] 02-2140-2800 [대표 팩스번호] 02-2140-2801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SL영업담당 02-2140-2847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식회사 푸드머스	푸드머스(SL)외 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2번길 31			
	법인 설립일자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0.04.03	2000.04.03	천영훈 박광순	02-2140-2800	02-2140-2801
	법인등록번호	110111-1929417	사업자등록번호	120-86-03023	

2.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 임원현황]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대표이사	천영훈	푸드머스(SL) 외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2번길 31		
			천영훈 박광순	02-2140-2800	02-2140-2801
대표이사	박광순	푸드머스(SL) 외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2번길 31		
			천영훈 박광순	02-2140-2800	02-2140-2801
사용인 (임원)	유원무	푸드머스(SL) 외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2번길 31		
			천영훈 박광순	02-2140-2800	02-2140-2801
사용인 (임원)	김종현	푸드머스(SL) 외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2번길 31		
			천영훈 박광순	02-2140-2800	02-2140-2801

[계열사현황]

관계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소		
계열사	풀무원식품(주)	풀무원(냉장) 풀무원(냉동) 풀무원(종합)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양로 730-27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우봉 조승범 이동훈	02-2040-4300	070-7016-2106
	법인등록번호	154511-0039324	사업자등록번호	303-81-51649	
관계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소		
계열사	(주)풀무원녹즙	풀무원녹즙	충북 증평군 도안면 원명로 35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김진홍 김미경 박광순	02-2186-8500	02-582-4115
	법인등록번호	154411-0016762	사업자등록번호	301-81-98406	
관계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소		

계열사	풀무원건강생활 (주)	풀무원로하스	충북 증평군 도안면 원명로 35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김진홍 오경림 박광순	02-2186-8500	070-8708-6158
	법인등록번호	154411-0034110	사업자등록번호	118-88-01235	
관계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소		
당사	(주)푸드머스	푸드머스(KIDS) 푸드머스(SL) 푸드머스(Health&Care)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 2 번길 31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천영훈 박광순	02-2140-2800	02-2140-2801
	법인등록번호	110111-1929417	사업자등록번호	120-86-03023	
관계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소		
계열사	풀무원샘물(주)	풀무원샘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화동로 1870 번길 142-24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백동욱	02-2140-8700	02-2140-8701
	법인등록번호	154411-0011928	사업자등록번호	301-81-71746	
관계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소		
계열사	(주)올가홀푸드	내추럴하우스바이올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71 길 4, 2 층		
			대표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권순옥	02-2104-0171	02-2104-0119
	법인등록번호	110111-1449522	사업자등록번호	114-81-80641	

※ 2019.3월 풀무원건강생활(주)을 회사분할하여 (주)풀무원녹즙(가맹사업: 풀무원녹즙, 기존 사업자 유지)과 풀무원건강생활(주)(가맹사업: 풀무원로하스, 신규 사업자등록)로 분할 설립하였습니다.

3.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해당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푸드머스(SL) 풀스키친	바른먹거리 바른식재료
상 호	특판/유통/FS	※ 상호등록(사업자등록신청 포함) 등에는 당사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표(서비스표)	 풀무원푸드머스	상표 등록번호 4014980000000 4015297550000 4014995100000 4014990710000 4015297540000 4014990720000 4014995110000
		상표 등록번호 4015907000000 4015907010000

풀'스키친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133,119,852	84,956,755	48,163,096	459,335,867	23,004,089	18,265,663
2022	156,133,675	99,646,246	56,487,429	557,865,633	28,314,476	22,192,956
2023	167,373,570	106,783,404	60,590,165	652,092,557	29,173,396	23,802,868

그 근거자료는 별첨[재무현황]과 같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가맹사업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련 임원	천영훈	대표	2022.09~현재	(주)푸드머스 대표이사	기업총괄
비관련 임원	박광순	대표	2021.07~현재	(주)푸드머스 대표이사	기업총괄
비관련 임원	유원무	감사	2012.03~현재	(주)푸드머스 감사	감사
비관련 임원	김종현	이사	2021.11~현재	(주)푸드머스 이사	이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4	0	340

8. (최근 3년 동안)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풀무원식품(주)	가맹사업 경영	2008.07.03~현재	풀무원(냉장)(등록번호: 20080500007)이라는 유통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6.5~현재	풀무원(냉동)(등록번호: 20160768)이라는 유통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예 정	풀무원(종합)(등록번호:

				20212873)이라는 유통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풀무원녹즙	가맹사업 경영	2005.01.01~현재	풀무원녹즙(등록번호: 20080100084)이라는 유통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풀무원건강생활 (주)	가맹사업 경영	2019.03.01~현재	풀무원로하스(등록번호: 20080500014)이라는 브랜드의 유통사업 경영
당사	(주)푸드머스	가맹사업 경영	2000.04.03~현재	푸드머스(KIDS)(등록번호: 20160722)이라는 유통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6.5~현재	푸드머스(SL)(등록번호: 20080100073)이라는 유통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7.08~현재	푸드머스(Health & Care)(등록번호: 20171108)이라는 유통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풀무원샘물(주)	가맹사업 경영	2003.10.01~현재	풀무원샘물 (등록번호: 20080500009)이라는 유통사업 경영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올가홀푸드	가맹사업 경영	2012.08.24~현재	내추럴하우스바이올가(등록번호: 20120100433)이라는 유통사업 경영

※ 2019.3월 풀무원건강생활(주)을 회사분할하여 (주)풀무원녹즙(가맹사업: 풀무원녹즙, 기존 사업자 유지)과 풀무원건강생활(주)(가맹사업: 풀무원로하스, 신규 사업자등록)로 분할 설립하였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	관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풀무원푸드머스	가맹점운영	등록 20190709 20191008 20190712 20190711 20191008 20190711 20190712	등록 4014980000000 4015297550000 4014995100000 4014990710000 4015297540000 4014990720000 4014995110000	(주)풀무원	20290709 20291008 20290712 20290711 20291008 20290711 20290712
	가맹점운영	등록 20200327	등록 4015907000000	(주)풀무원	20300327
	가맹점운영	등록 20200327	등록 4015907010000	(주)풀무원	20300327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사용을 허용하는 지적재산권의 범위에는 귀하가 상호등록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

는 용도는 포함되지 않으며, 귀하는 당사의 상표 등을 그러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당사의 상표 중 출원 중인 상표는 관계법령으로 보호되지 못합니다.

※ 당사는 주식회사 풀무원과 계열회사 관계로 상기 상표권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1. 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2004년 04월 01일

2. 당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푸드머스	푸드머스	이효율	2004.4~2016.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2번길 31
(주)푸드머스	푸드머스 (SL)	이효율	2016.5~2017.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2번길 31
(주)푸드머스	푸드머스 (SL)	이효율 유상석	2017.4~2018.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2번길 31
(주)푸드머스	푸드머스 (SL)	유상석 이우봉	2018.3~ 2018.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2번길 31
(주)푸드머스	푸드머스 (SL)	유상석	2018.12~ 201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2번길 31
(주)푸드머스	푸드머스 (SL)	윤희선	2019.1~ 202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2번길 31
(주)푸드머스	푸드머스 (SL)	윤희선 박광순	2021.07~ 20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2번길 31
(주)푸드머스	푸드머스 (SL)	김진홍 박광순	2022.01~ 2022.0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2번길 31
(주)푸드머스	푸드머스 (SL)	천영훈 박광순	2022.09~ 현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로2번길 31

3. 당 가맹사업의 업종

영업표지	업종	
푸드머스(SL)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도소매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들 학교와 거래하는 중간판매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자재 납품 및 공급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67	67	0	66	66	0	66	66	0
서울	6	6	0	6	6	0	2	2	0

부산	2	2	0	2	2	0	2	2	0
대구	1	1	0	1	1	0	1	1	0
인천	2	2	0	2	2	0	2	2	0
광주	4	4	0	3	3	0	3	3	0
대전	1	1	0	1	1	0	2	2	0
울산	1	1	0	1	1	0	1	1	0
세종	1	1	0	1	1	0	1	1	0
경기	12	12	0	12	12	0	16	16	0
강원	8	8	0	8	8	0	8	8	0
충북	5	5	0	5	5	0	4	4	0
충남	6	6	0	6	6	0	6	6	0
전북	6	6	0	6	6	0	6	6	0
전남	3	3	0	3	3	0	3	3	0
경북	4	4	0	4	4	0	4	4	0
경남	3	3	0	3	3	0	3	3	0
제주	2	2	0	2	2	0	2	2	0

5.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66	1	0	0	0	67
2022	67	0	0	1	0	66
2023	66	2	1	1	1	66

6. (최근 3년 동안) 당 가맹사업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	2022.12	2023.12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풀무원식품 주식회사	풀무원(냉장)	20080500007	도소매	287/0	272/0	260/0
		풀무원(냉동)	20160768	도소매	235/0	244/0	246/0
		풀무원(종합)	20212873	도소매	-/-	-/-	-/-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풀무원녹즙	풀무원 녹즙	20080100084	도소매	397/0	385/0	362/2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풀무원건강생활 (주)	풀무원로하스	20080500014	도소매	161/0	153/0	142/0
당사	(주)푸드머스	푸드머스(KIDS)	20160722	도소매	86/0	88/0	88/0
		푸드머스(SL)	20080100073	도소매	67/0	66/0	66/0
		푸드머스(Health & Care)	20171108	도소매	27/0	27/0	28/0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풀무원샘물(주)	풀무원샘물	20080500009	도소매	251/0	252/0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주)올가홀푸드	내추럴하우스바 이올가	20120100433	도소매	26/0	22/0	12/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당 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

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전년도 말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하한		※6개월미만 영업제외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산정 가맹점	기타
전체	66	1,802,293	24,335	6,676,859	127,195	99,138	2,203	65	1곳제외
서울	2	해당없음						1	5곳미만
부산	2	해당없음						2	5곳미만
대구	1	해당없음						1	5곳미만
인천	2	해당없음						2	5곳미만
광주	3	해당없음						3	5곳미만
대전	2	해당없음						1	5곳미만
울산	1	해당없음						1	5곳미만
세종	1	해당없음						1	5곳미만
경기	16	2,540,213	26,120	6,676,859	121,665	748,827	2,874	16	
강원	8	864,002	14,251	2,573,392	56,992	206,045	4,609	8	
충북	4	해당없음						4	5곳미만
충남	6	908,798	15,490	1,553,724	38,843	447,711	5,422	6	
전북	6	1,111,920	23,408	2,750,855	50,015	420,837	10,646	6	
전남	3	해당없음						3	5곳미만
경북	4	해당없음						4	5곳미만
경남	3	해당없음						3	5곳미만
제주	2	해당없음						2	5곳미만

※ 당 가맹사업의 특성 상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워 상기 매출액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맹점 공급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매출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은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당 가맹사업 매출현황은 가맹사업 특성(공동창고 운영 등) 상 점포의 유무나 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으로 면적 3.3m²당 가맹점매출현황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당 가맹사업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 가맹사업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66	4,458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해당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의 전년도 당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실시기간	집행한 비용계(단위: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합계		 (비공개)	9,356,936	 (비공개)		
광고	-	-	-	-	-	
	소계		9,356,936	 (비공개)		
판촉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 상기 판촉내역에 있어, 제품단가 할인 등은 판촉비 항목으로 책정되지 않거나 산정이 어려워 기재하지 않은 가맹점사업자 부담 판촉비용이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기관

당사는 가맹비나 보증금을 개업 이후 지급받거나 담보형태로 받기에 가맹금 등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해당 없습니다.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1.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 관련) 당사와 임원의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최근 3년 동안) 당사와 임원의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5,500	영업개시 후 3일내	가맹사업법 제 10조 가맹금 반환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공 된 경우 해당 대가는 반환 되지 않음	※아래참조
총계	5,500				

※ 상기 가맹비는 가입비, 영업표지 등 사용대가, Know-how 제공 및 교육대가, 개설지원대가(간판 지원, 차량도색비용, 피복지원), 기타 운영규칙 등 각종 자료 제공 대가로 구성됩니다. 영업표지 등 사용대가는 계약의 만료 시까지 일로 계산하여 경과한 기간의 해당분의 금액은 소멸, 잔여기간의 해

당분의 금액은 반환합니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으며, 계약 종료시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금	20,000~564,000	계약체결과 동시에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미수금 등	※ 가맹점 운영규칙에 의함

※ 담보설정 기준

관련 계약조문 제15조 (담보설정)	
③ 담보는 인적담보를 제외한 물적 담보만을 인정하며, 현금, 질권(예금), 보증보험, 지급보증, 근저당(임야, 나대지 등 제외) 등의 방법으로 제공 할 수 있다.	
④ 가맹점사업자의 담보금액 설정은 '운영규칙'의 '담보금액 설정기준'에 준하며, 그 해당하는 금액인 ()원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⑤ 거래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외상물품대금이 본 조 4항의 담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추가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추가담보 설정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보증금은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가맹비	해당없음	※영업개시 후 3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함
보증금	해당없음	※ 보증보험증권이나 담보설정을 원칙으로 함, 추가 현금담보의 경우는 영업개시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합계		

4) 귀하가 영업개시 이전부담 중 그 밖에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점사업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최적의 입지 도출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며, 영업이 늦어질 수 있음.	문의: SL영업담당 02-2140-2847

※ 당사는 귀하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존의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설치장소, 통행인의 수, 지역의 특징, 업종의 특성에 따른 매출 성향 등을 귀하에게 조언을 하며, 가맹점의 입지 선정은 귀하가 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동종업계 경력자 우대
홍보영양사	특별한 기준 없음	영양사 면허 소지자 우대
사무직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50세 미만(판매원이 아닌 자)
물류직원	특별한 기준 없음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 단 의무사항이 아니며 가맹점주의 요청이 있을시 본사에서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가맹점이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매하거나 보유한 장비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상표권의 사용과 규모에 있어서 당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당사는 가맹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 기준은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BOX비용	협력업체	박스 분실금액	분기별 정산	분실 시 배상	분실 시 배상	풀무원에서 제품공급시 사용되는 P박스 및 다용도 박스는 풀무원 자산으로 반납 하여야 합니다.
판촉인력비	가맹본부	미정 (사전 통지)	판촉전 입금	전액 가맹점판촉 을 위한 지원	전액 가맹점판촉 을 위한 지원	
CCTV운영비	지정업체 (미정)	실비	미정	해당없음		※ 설치비용은 가맹본부 부담 운영비용은 가맹점부담
전국광고비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실비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환경개선에 따른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당사의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간판변경 비용		따라 부담	기준에 따라 부담			비용 참조
인테리어,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가맹본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당사의 기준에 따라 부담			VII.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 참조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전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회계처리	가맹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4회	문의: 영업본부 (02-2140-2919)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보증금의 담보증액	※ 가맹점 운영규칙에 의함	회계연도말	계약종료 시 미수금 등 공제후 반환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 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 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간판, 점포 내·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포스터 등 영업표지와 관련된 시설을 교체하며 그 외에 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로 원하는 가맹점인 경우는 정해진 가맹비 기준에 의거하여 가맹비를 받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신규가맹계약에 준하여 모든 개설회비를 순차적 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의 해당가맹사업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맹점사업자의 모든 물건으로부터 당사의 브랜드 등 영업표지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가 제공한 모든 운영매뉴얼 및 양식, 보고서, 서신, 운영파일 등 점포의 운영에 관련된 문서를 당사로 반환하거나 삭제하여야 하고, 관련된 어떠한 사본이나 기록도 보유할 수 없으며 당사의 기밀유지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귀하가 일정한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46조 (계약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①	계약이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는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심볼 등 일체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점포내외 간판, 차량 등에서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한다.
2.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위임한 자의 입회하에 가맹본부가 제공한 전산프로그램 및 관련정보를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3.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대여한 장비, 설비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양수인에게 인계할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지급받은 용기를 반납하고 미납금액은 변상하여야 한다.
5.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제상품을 공급받기 위해 진행한 물류 수수료의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6.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지원한 금전 또는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7.	가맹본부는 본 계약에서 규정한 가맹금의 반환이 강제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8.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종료 이후에도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철거, 삭제, 정보수정 등의 비용의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에 의거하여 가맹점이 그 의무를 다한 경우 담보를 반환한다.
④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가 발생한 당사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명칭(기업명)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단위:천원)	비고
(주)올가홀푸드	계열회사	 (비공개)	 (비공개)	 (비 공개)
(주)풀무원녹즙	계열회사	 (비공개)	 (비공개)	 (비 공개)
풀무원건강생활(주)	계열회사	 (비공개)	 (비공개)	 (비 공개)
풀무원다논 주식회사	계열회사	 (비공개)	 (비공개)	 (비 공개)
풀무원식품 주식회사	계열회사	 (비공개)	 (비공개)	 (비 공개)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2023년 기준

2) 당사가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2023년 기준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두부류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상품공급 중단가능
면류			
만두류			
나물류			
기타 상품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 판매제한 관련 규정

관련 계약조문 제20조 (제품의 판매 및 관리)	
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제·상품의 납품처로부터 리콜(Recall)통보를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리콜(Recall)통보를 받은 즉시 가맹본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량 제·상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⑦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제·상품의 공급물 차등을 이용하는 등 시장질서를 흐리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명백히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가맹사업의 안정성을 침해하여 가맹본부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맹본부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초·중·고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및 이들 학교와 거래하고 있는 중간판매상인 외 거래처	※ 제상품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당 가맹사업의 목적과 범위

관련 계약조문 제1조 (목적)	
②	본 가맹사업은 청소년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자재공급사업으로써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를 위하여 대상 고객(초·중·고등학교 또는 이들 학교 대상으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중간판매상인)과 취급품목을 제한한다. 다만, 가맹본부와의 사전 합의를 통해 대상 고객을 이들 학교에 병설되어 있는 병설 및 단설유치원에 직·간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유통구조를 취급품목에 따라 '유통가맹점사업자'와 '입찰가맹점사업자'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신사업(홍비즈 등)을 추진 할 경우 참여 희망 가맹점사업자에 한하여 해당 영업지역 내 고객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납품할 수 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귀하의 가맹사업 계약지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처와의 거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 상기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참조	당사기준	사전 통지	2024 .01월 기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 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당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 (※ <u>초·중·고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및 학교와 거래하는 중간판매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자재 납품 및 공급업</u>)	푸드머스(SL)	해당없음

※ 당 가맹사업은 초·중·고등학교 또는 학교와 거래하는 중간판매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자재 납품 및 공급업으로, 동일한 업종이 아닌 7세 이하의 영유아보육 및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식자재 납품 및 공급업을 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Kids가맹사업)과 복지시설 및 병원 등 의료시설(요양병원, 전문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자재납품 및 공급업을 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H&C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과 중복으로 입점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아닌 유치원 및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자재 납품 및 공급업과는 영업지역을 중복해서 입점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지역 설정기준

설정 기준	설정방법
영업지역은 시/군/구/읍/면/동 단위 표기 또는 종상 및 학교명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영업지역을 협의 별지에 기재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기타 영업지역 관련 규정

관련 계약조문 제14조 (영업지역)
⑥ 가맹본부는 본 조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과 별도로 타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써 가맹본부가 별도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하기 전까지 고객관리 위탁지역을 설정하여 가맹점사업자에 임시로 영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⑦ 가맹본부는 고객관리 위탁지역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직접 인수하거나 또는 후임사업자를 구인하였을 때에는 고객관리 위탁지역 고객에 대한 제반영업권의 인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가맹본부는 인계요구일(영업개시일)로부터 15일 전에 가맹점사업자에 인계요구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동의를 얻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당사는 당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가맹점	푸드머스(KIDS)	두부류, 면류, 만두류 나물류, 기타 상품	거래상대방이 다름
가맹점	푸드머스(Health & Care)	두부류, 면류, 만두류 나물류, 기타 상품	거래상대방이 다름
대리점	SL대리점, 다래유통	수산 및 전체품목	대리점으로 진행
중간유통	해솔네트웍스	전체품목	중간유통
	바른에프엘	전체품목	중간유통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체품목	중간유통
	당진학교급식센터	전체품목	중간유통
	포항시학교급식지원센터	전체품목	중간유통
	청밀	전체품목	중간유통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샵풀무원	shop.pulmuone.co.kr	치킨너겟 등 총 11개품목	판매방식이 다름

온라인	옥션	http://www.auction.co.kr/	곡물바 등	판매방식이 다름
온라인	G마켓	https://www.gmarket.co.kr/	곡물바 등	판매방식이 다름
온라인	11번가	http://www.11st.co.kr	한우곰탕 등	판매방식이 다름
온라인	네이버	https://brand.naver.com/pulmuone01	함박스테이크 등	판매방식이 다름
온라인	카카오	https://store.kakao.com/	한우곰탕 등	판매방식이 다름

※ 온라인 판매의 경우 유통경로의 특성상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 당사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상품이 있으나, 당 가맹사업 영업표지(SL)를 별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당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단, 재계약(갱신)의 경우 전체 가맹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통상 매년 3월 1일에 전체 가맹점사업자가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관련 계약조문 제42조 (계약갱신 거절)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기간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절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1.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서상의 가맹금 등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 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 재계약 시 경영방침 및 경영전략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다음 해 계약서에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게 된 경우 재계약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43조 (재계약의 유보)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재계약을 유보하거나 재계약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 1. 가맹본부의 경영방침 및 경영전략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차년도 계약서에 이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게 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고 있어 이의 해소가 필요한 경우 ② 재계약 유보 기간 동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상품을 공급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이 기간 동안은 가맹본부의 변경된 제도를 적용한다.

③ 가맹점사업자가 재계약 유보통지에 기재된 기일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본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관련 계약조문 제45조 (계약해지) 제1항	
1. 가맹점사업자가 식품위생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대한 위반을 하여 가맹본부 및 행정청으로부터 적발되어 가맹본부의 명성과 권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 경우	
2. 가맹점사업자의 중요재산 또는 영업의 중요한 부분에 가압류, 가처분의 보전처분이 이루어져 가맹점 영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영업활동 이외의 목적이나 활동에 가맹본부의 상호 등을 사용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 사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관리인 및 주주들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권익을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 양도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하려고 한 경우	
5.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장부와 기타 중요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가맹본부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경우	
6. 본 계약에 의거,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회계 및 기록 등을 포함한 재정정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불이행, 거부 또는 해태한 경우	
7.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활동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 '영업지역'에 위치한 거래처 등에 대해 영업이나 사업을 고의로 중단하거나 포기한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중죄 또는 가맹본부의 시스템의 운영이나 지적재산권의 가치 그리고 이에 관한 영업상의 신용 및 가맹본부 또는 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범죄행위를 범하여 수사기관의 유죄선고를 받는 경우	
9. 가맹본부가 주최하는 교육, 세미나(Seminar), 워크샵(Workshop) 등에 사전 통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간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1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불해야 하는 제·상품 대금, 설비대금 기타 금전채무의 납입을 불이행, 거부, 해태한 경우	
1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불해야 할 연체금이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담보 범위를 초과하여, 가맹본부가 담보 범위 내로 연체금의 축소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가맹점사업자의 시설, 차량, 장비,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히 지장되어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3. 본 계약에 의거, 통일되고 높은 수준의 품질수준, 서비스, 청결 및 위생상태의 유지와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대리인이 조사한 결과 '운영규칙' 및 기타 규정된 수준에 위배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14. 본 계약에 의거,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의 대리인이 가맹점사업자의 사무실 등의 사업장에서의 제·상품의 거래품목 준수, 보관 및 관리상태, 가맹점사업자가 거래하는 거래처에서의 진열 및 판매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처리상태,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피고용인의 제·상품 취급상태 및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대리인의 근무상태 등을 검사한 결과 '운영규칙' 및 기타 규정된 수준에 위배된 결과가 발생한 경우	
15. 가맹본부가 계약기간 중 매 6개월 단위로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장 및 가맹점사업자와 거래하는 거래처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 가맹점사업자가 실내·외 디자인, 간판, 설비, 장비, 기구 등 본 계약상 요구되는 '운영규칙' 및 기타 기준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경우	
1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회계장부, 기록, 계산서, 거래처 정보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결과 고의적 매출누락 또는 매출에 관련된 규정위반이 발생한 경우	
17. 제출 요구된 '경영개선 계획', "사업전략 계획"을 미제출 하거나 그 내용이 경영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실한 경우	
18.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진행 후 배송차량의 타코메타기 미설치, 냉장·냉동 기준온도 미준수, 차량 미운행 및 미관제 등 가맹본부의 식자재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며, 시정권고 이후로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9. 가맹점사업자가 배송차량에 상품 적재 시 냉장, 냉동상품을 혼적하거나 온도센서 등을 조작하는 경우	

2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물류센터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제품의 소분하거나, 차대차로 제품을 인수받아 입고할 경우
21. 본 계약 제16조(시설 및 설비의 구비), 제17조(차량의 준비) 제32조(장비의 유지 및 관리) 제33조(차량의 운행 및 관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2.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23. 투병 등 가맹점사업자의 중대한 건강상의 이유로 6개월 이상 영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
24. 학교 영업담당 등 가맹본부의 직원에 대한 언어폭력 또는 성희롱을 한 경우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45조 (계약해지) 제2항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 당사자 간의 서면으로 된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 가맹점운영규칙은 아래의 경우에 귀하에게 사전통보 후 동의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4조 (가맹점운영규칙 및 계약의 해석)
② 가맹본부는 본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및 대외 신용도 확보,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규칙을 개정·변경할 수 있다. 가맹본부는 운영규칙의 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변경 적용일 15일 전에 우편, 팩스, 전자우편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단, 가맹점사업자 통지에 개정·변경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지일을 기준으로 15일이 지난 시점의 익월 1일부터 개정 또는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맹본부는 본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및 대외 신용도 확보, 소비자 보호, 전국 혹은 일정지역에서의 일정기간 동안의 판촉활동 등을 위하여 신속한 개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에 근거한 최소한의 부담을 지우거나 가맹본부의 부담으로 일부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내용의 '수시운영규칙'을 정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이러한 '수시운영규칙'에 대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맹본부는 '수시운영규칙'을 적용하는 날로부터 15일 전에, 해당 내용을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해당 없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SL영업담당 02-2140-2847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종료됨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절차 완료	
업무위탁	불가능	-		

※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아래와 같이 [푸드머스(SL)]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당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 (※ <u>초·중·고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u> <u>및 이들 학교와 거래하는</u> <u>중간판매상인</u> 을 대상으로 하는 식자재 납품 및 공급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SL영업담당 02-2140-2847

관련 계약조문 제1조 (목적)	
② 본 가맹사업은 청소년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자재공급사업으로써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를 위하여 대상 고객(초·중·고등학교 또는 이들 학교 대상으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중간판매상인)과 취급품목을 제한한다. 다만, 가맹본부와의 사전 합의를 통해 대상 고객을 이들 학교에 병설되어 있는 병설 및 단설유치원에 직·간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유통구조를 취급품목에 따라 '유통가맹점사업자'와 '입찰가맹점사업자'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신사업(홈비즈 등)을 추진 할 경우 참여 희망 가맹점사업자에 한하여 해당 영업지역 내 고객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납품할 수 있다.	
관련 계약조문 제38조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④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는 지역을 불문하고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종료, 해지 후 6개월 이내에 동일 장소는 물론 및 동일 영업지역 내에서 본인 및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전 3개월 평균매출액을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특별히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해당없음	해당없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장비의 활용 및 사용현황	담당자 가맹점 방문 → 확인(촬영)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조치 → 완료	수시	SL영업담당
프로모션 및 증정품의 활용	담당자 가맹점 방문 → 조사 → 평가반영 → 완료	수시	"
차량의 청결 및 냉장준수	담당자 차량확인 → 도색,청결도,온도확인 → 결과에 대한 가맹점 통보 → 가맹점사업자 확인 → 평가반영	수시	"
피고용인의 청결	담당자 확인 → 피복의 청결 및 통일성유지 → 결과 통보 → 가맹점사업자 확인 → 완료	연1회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사의 담당팀을 통해서 언제든지 조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분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100%	0%	별도 절차 없음	
판촉 전체 행사	협의 (균등부담)	협의 (균등부담)	판촉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 가맹점부담액 제시 → 판촉 → 사후결과 공고	

관련 계약조문 제30조 (광고 및 프로모션)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기획한 방향과 방침에 따라 프로모션 물품을 활용하여야 한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기획한 방향과 방침에 따르지 아니한 채 프로모션 물품을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비용으로 제공된 프로모션 물품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향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프로모션 물품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용도로 소비한 프로모션 물품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에게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가맹본부가 현금을 지원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합의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반시점부터 일할로 환산한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⑦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적인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활동을 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참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⑧ 전국적인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의 횟수, 시기, 매체,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필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단, 비용은 가맹본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광고물, 기타 선전매체의 제작, 배포 등에 있어서 당사의 표준지침 및 상기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 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당사의 영업비밀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38조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①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상 비밀이나 노하우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함)을 본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누설,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가맹점사업자가 본 조의 영업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에게 유·무형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전자문서 포함)의 내용을 인쇄, 복사, 대여, 공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맹계약 종료 시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를 가맹본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가맹점사업자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의 피고용인에 및 대리인에게도 해당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한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본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 5 조 ('영업표지 등'의 사용)

③ 가맹점사업자가 본 조 2항 각 호에 대한 행위의 결과로 가맹본부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언론매체를 통한 가맹본부의 신뢰회복이 필요한 경우, 3개 중앙일간지 사회면 하단 전체의 크기로 광고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7일 이내에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이 표기된 간판, 차량 등 일체의 영업심볼을 가맹점사업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위 '영업표지 등'을 철거해야 하는 기한 이후에도 가맹본부의 '영업표지 등'이 표기된 영업심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매 1일당 [일 십 만원]을 그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20 조 (제품의 판매 및 관리)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제·상품을 취급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유통 및 보관 등 관리소홀로 인해 제·상품에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하여 행정기관의 단속반, 소비자단체, 고객 등으로부터 고소 또는 고발당하였을 경우,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제·상품의 납품처로부터 리콜(Recall)통보를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리콜(Recall)통보를 받은 즉시 가맹본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량 제·상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⑦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제·상품의 공급를 차등을 이용하는 등 시장질서를 흐리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명백히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가맹사업의 안정성을 침해하여 가맹본부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맹본부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⑧ 가맹점사업자의 본 조 의무위반으로 인해 가맹본부가 형사처벌, 행정처분(경고, 벌금, 영업정지 등) 등을 받아 그로 인해 가맹본부에게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제5조 3항에 준하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 25 조 (제조물책임)

① 가맹본부가 제공하지 아니한 제·상품을 가맹점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하거나, 본 계약 및 '운영규칙'에 위반된 행위 등 기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가맹본부가 제조물책임법(PL법)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그 손해배상액 및 이에 대한 연 15% 비율에 의한 이자를 배상하여야 한다. 위 손해배상에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액 이외에 가맹본부가 이로 인하여 부담하는 해당제품의 리콜비용, 폐기비용 및 기업이미지 손상으로 인한 판매 감소분의 손해를 포함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조물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38 조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④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는 지역을 불문하고 가맹본부의 사전 동의 또는 승낙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종료, 해지 후 6개월 이내에 동일 장소는 물론 및 동일 영업지역 내에서 본인 및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전 3개월 평균매출액을 가맹본부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제 50 조 (위약금 및 손해배상)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과 일반법률 및 상관례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50일 내외	9페이지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문의 및 게시판 공고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및 응대	D-50	
개설신청서 접수	- 가맹희망자 신청서 접수	D-50	
가맹점후보선정심의위원회	-내부 심사 및 면접을 통한 개설여부 확정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산정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제공	D-35	
가맹 계약 체결	-가맹 계약 체결 -가맹계약서 1부 교부 보관	D-20	
담보설정	-담보설정	D-20	9페이지 참조
가맹점 개설 준비	-지점 임차 및 인테리어 구성 -가맹점 교육 이수 및 신고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D-35 ~ D-20	
입문 교육 (Boot Camp) 실시	-사업 및 제품에 대한 기초 이해 -가맹점 운영 이론 및 실습 -고객 관리 이론 및 실습	D-20 ~ D-5	
가맹점 오픈	-가맹점 오픈 및 영업개시	D-Day	
가맹금 입금	- 해당은행에 가맹금 입금	D+3일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소요비용 중 영업설비 비용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인계를 받는 경우 상호간 협의를 거쳐 귀하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장비의 수, 사용 연식 등의 차이로 인해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거듭 확인 합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 가맹사업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계약조문 제52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법률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본 계약의 해석 및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협의에 의하여 제2항에 의한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동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해당없음				
판촉장려금	당사의 기준에 따라 지급	KPI 기준으로 책정	매월 20일~25일 기간내 지급	KPI 기준에 따라 차등	
판촉지원	전체 판촉행사 시 일부 판촉물 지원	없음 (전 가맹점 해당)	가맹계약기간	판촉물로 지원	판촉 용도 외 사용 시 지원제한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해당없음				
반품지원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SL영업담당
가맹점사 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6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SL영업담당

4. 신용 제공 등 내역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해당없음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 고
매출장려금 지급	매출목표달성에 따른 장려금 지원	해당월의 매출목표 달성	해당월	100% 이상 : 2% 105%이상 : 3% 110%이상 : 4%	24.9 변경 예정
품목전환 장려금	타사 필수식재 품목전환 지원금	입찰가맹점 필수식재 자사 품목 전환 차액 지원	해당월	매월 대응품목 및 실적 당 지원금액 별도 협의	
품목전환 장려금	개별학교 건바이건 행사지원금	월별 지정 프로모션 외 학교영업통한 품목 전환시 건별 차액지원	해당월	학교영업담당 1인 당 5개 학교, 지원품목 사전 협의/결정 후 지원액의 50%	
학교영업담당	가맹점 소속 학교영업담당 인건비 지원금	풀무원 전담 학교영업담당 운영	해당월 방학제외	1.2 백만원	증빙 확인

권역 장려금	중상매출 장려금	대형중상을 대상으로 가맹점의 중상영업활성화 지원	해당월	중상업체 1 개당 1. 평균매출액 10%성장목표 달성시 3%지급 2. 권역중상매출 상위 5 백이상 대상처 2% 지급	1.2 구분 적용
Base category 활성화 장려금	일부품목 목표달성 장려금	만두, 찬류, 소스류, 떡류 중 전년 동월 대비 성장시 목표달성장려금	해당월	증가된 매출액의 10%~20%지급	지정 개별
판매환경 개선비	신차교체, 신차 증차에 따른 장려금	1 ton, 2.5ton 차량 : ① 노후 차량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② 신차로 추가 구입할 경우	해당월	3 백만원	
판매환경 개선비	신차교체, 신차 증차에 따른 장려금	전략구매팀에서 지정한 2EVA(1ton) or 투넵(2.5ton) 설치업체에서 장착 시	해당월	5 백만원	증차 3 백 + 추가 2 백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입문교육	푸드머스 및 가맹점 제도 소개 가맹점 경영 방법/노하우 제품 지식, 시스템 활용, CS, 공정거래(CP), 청탁금지법 현장실습, 공장/물류센터 견학	집단강의 또는 합숙교육	최초 1회 (2일)	필수교육
역량향상과정	고객 응대 및 CS 납품활동, 매출/매장 관리(중상급)	집단강의 또는 합숙교육	년 1회	필수교육
수시교육	-신제품 교육 -각종 이벤트 및 사업 능력 향상 교육	집단강의 또는 합숙교육	수시	필수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내용	비고
입문교육	2일(1회)	가맹비에 포함	푸드머스 및 가맹점 제도 소개 가맹점 경영 방법/노하우/공정거래(CP), 청탁금지법/ 제품 지식/시스템 활용/CS/ 현장실습/공장/물류센터 견학	필수교육
역량향상과정	년1회	가맹본부 부담원칙	고객 응대 및 CS/ 납품활동, 매출/매장 관리(중상급)	필수교육
수시교육	수시	가맹본부 부담원칙	신제품 교육/각종 이벤트 및 사업 능력 향상 교육	필수교육

※ 특별하게 시행하는 역량향상과정이나 수시 교육의 경우에는 교육비용은 당사의 원칙적으로 부담하여 경우에 따라 사전 동의를 구하고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

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신입 가맹점주의 경우 기한 내 교육이나 회의, 세미나, 워크샵(이하 ‘교육 등’이라함)을 받지 않거나,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 등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	-

※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재무현황(2021년, 2022년, 2023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